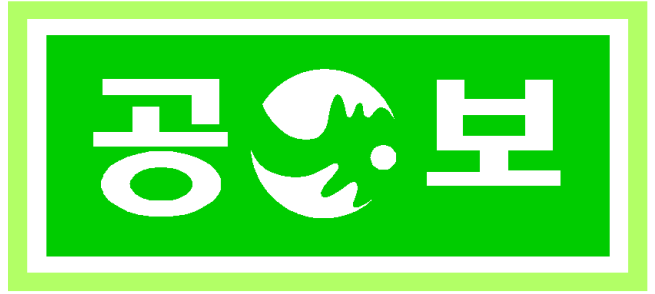


# 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공 보	기 관 의 장



## 제 1156 호 2019. 1. 10. (목)

### 고 시
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-4호[공유수면 점·사용 변경 허가사항 고시] ..... 2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-5호[하천 점용허가(변경) 고시] ..... 3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-7호[도로명주소 고시] ..... 4

### 공 고
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-24호[2019년 정기예방접종 사전알림 공고] ..... 6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-25호[2019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공고] ..... 7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-29호[2019년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고] ..... 9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-30호[2019년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 공고] · 10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-31호[2019년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 공고] ..... 12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-49호[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] · 13

안 내	○ 북구 종이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 공문을 수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☞ 북구 홈페이지(www.bukgu.ulsan.kr)→구청소식→알림마당→북구공보
--------	--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-4호

## 공유수면 점·사용 변경 허가사항 고시

「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.

2019년 1월 10일

##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#### □ 고시내역

허가 년월일	허가 번호	피허가자		점용장소	면적 (㎡)	허가기간	점용목적	비 고
		주 소	성 명					
2019. 1.3.	2019 -1	울산광역시 북구 신명길 109	오시환	울산광역시 동해안로 1795-6 일원 지선	8.4	기간 변경 전 2017. 1. 1. ~ 2018. 12.31 기간 변경 후 2019. 1. 3. ~ 2020. 12. 31.	전북배양장 해수인수관로	기간 변경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9 - 5호

## 하천 점용허가(변경) 고시

「하천법」 제33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  
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년 1월 10일

### 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**1. 하천의 명칭**

명촌천

**2.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**

가. 성명 : SK 건설(주)

나. 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238-1

**3. 점용 목적 및 개요**

자재야적장

**4.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**

가. 위치 : 효문동 886-5, 886-6

나. 면적 : 712㎡

**5. 점용허가의 유효기간**

변경 전 : 2018. 1. 1. ~ 2018. 12. 31.

변경 후 : 2019. 1. 1. ~ 2019. 6. 30.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 - 7호

## 도로명주소 고시

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년 1월 10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278-19 외 4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		(별지참조)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(☎052-241-7583,7585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([www.bukgu.go.kr](http://www.bukgu.go.kr)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([www.iuso.go.kr](http://www.iuso.go.kr)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9. 1. 10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##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

순번	중점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부여사유	도로명 고시일
1	울산광역시 북구 장광동 1026-1	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278-19	2018-01-10	올신의 신임을 활성화 시키자는 취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9-06-18
2	울산광역시 북구 송정지구 B-5	울산광역시 북구 화산로 104	2018-01-10	자연부락 명칭을 사용해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10-04-27
3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매곡지구 A9B 9L10L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매곡1로 57	2018-01-10	호계매곡지구 명칭 사용을 사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함.	2017-05-04
4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매곡지구 A9B 11L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매곡1로 55	2018-01-10	호계매곡지구 명칭 사용을 사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함.	2017-05-04
5	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127 외 1(136)	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로 32-10	2018-01-10	기존 자연마을에 위거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9-04-08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 - 24호

## 2019년 정기예방접종 사전알림 공고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 제3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의거하여 정기예방접종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1월 10일

### 울산광역시 북구보건소장

- 대 상 : 만12세 이하 어린이 (2006.1.1. 이후 출생아)  
 내 용 :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 이용 시 전액 무료접종 가능  
 정기예방접종 사전알림 일정

대상전염병(백신)	접종횟수	접종시기
결핵 (BCG 피내용)	1	생후 1개월 이내
B형간염	3	생후 0, 1, 6개월
디프테리아/파상풍/백일해(DTaP)	5	생후 2, 4, 6, 15~18개월, 만 4~6세
소아마비(폴리오)	4	생후 2, 4, 6개월, 만 4~6세
DTaP-IPV 혼합백신	4	생후 2, 4, 6개월, 만 4~6세
DTaP-IPV/Hib 혼합백신	3	생후 2, 4, 6개월
Hib(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)	4	생후 2, 4, 6개월, 12~15개월
소아 폐렴구균	4	생후 2, 4, 6개월, 12~15개월
홍역/유행성이하선염/풍진(MMR)	2	생후 12~15개월, 만 4~6세
수두	1	생후 12~15개월
A형 간염	2	생후 12~36개월(2회)
일본뇌염(사백신)	5	생후 12~36개월(3회), 만 6세, 만 12세
일본뇌염(생백신)	2	생후 12~23개월, 24~35개월
자궁경부암(인유두종바이러스) HPV	2	만 12세 여아, 1차 접종 후 6개월 뒤
파상풍/디프테리아(Td) 또는 Tdap	1	만 11~12세
인플루엔자 ※	1	생후 6개월 ~ 만 12세 (첫 접종시기 따라 횟수 다름)

※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(<http://nip.cdc.go.kr>)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앱 : 위탁의료기관 및 접종내역 확인 가능

※ 인플루엔자는 계절 접종으로 매년 9~10월 중 실시하며 세부사항(접종대상 및 시기)은 추후 공고 예정

정기예방접종 사전알림 방법 :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, 전자메일, 전화, 우편 등

문 의 : 북구보건소 예방접종실 (☎ 052-241-8246~7)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9 - 25호

## 2019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공고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0조(예방접종업무의 위탁)에 의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1월 10일

### 울산광역시 북구보건소장

※ 위탁의료기관마다 접종 가능한 백신이 상이하므로 방문 전 전화 확인 필수

※ 위탁의료기관 백신 인터넷 확인 :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(<http://nip.cdc.go.kr>) > 지정의료기관찾기

	병·의원명	전화번호	주 소	
1	구암의원	287-7246	염포로 633	염포동 양정동
2	윤가정의학과의원	287-2300	염포로 529	
3	하나정형외과의원	287-9852	염포로 521	
4	한소아청소년과의원	288-0075	염포로 601, 현대자동차회관 2층	
5	함께하는의원	289-7046	염포로 673	
6	굿모닝이비인후과의원	287-4287	화봉로 67	연암동 화봉동
7	김유홍내과의원	288-9693	화봉로 67, 2층	
8	우리가정의학과의원	289-2075	화봉로 75	
9	이강우소아청소년과의원	268-6575	화산중앙로 84, 2층	
10	울산시티병원	280-9068	산업로 1007	
11	현대연합의원	291-9800	상방로 106, 2층	명촌동
12	김은정소아과의원	288-5510	명촌15길 10 (평창리비에르3차상가)	
13	이내과의원	289-1066	명촌로 85 (평창리비에르2차상가)	
14	행복한내과의원	283-2299	명촌로 85 (평창리비에르2차상가)	호계동
15	21세기좋은병원	290-2202	호계로 285	
16	세나산부인과의원	285-3800	호계로 281	
17	이순일내과의원	282-7588	호계2길 7	
18	하나산부인과의원	282-8258	호계로 292	신천동
19	김경원산부인과의원	296-5600	호계로 332-1 (현대하이플러스상가)	
20	울산아동병원	282-7171	호계로 332-1	매곡동
21	다정의원	282-0127	매곡1로 15, 2층	
22	드림아이의원	295-0129	호계매곡1로 31, 에일린의뜰 1차 삼가동	
23	봄소아청소년과의원	286-1311	매곡1로 15, 3층	
24	상쾌한이비인후과의원	281-1231	매곡로 115, 202호	
25	서울아산이비인후과의원	977-1000	매산로 15, 참조은빌딩 3층	
26	아이마음소아청소년과	716-5170	매곡로 115, 3층	

27	이진우내과의원	292-7179	매곡1로 46 (대우프라자)	
28	개구쟁이소아과의원	294-7504	신답로 35, 4층	중산동 상안동
29	김영근의원	282-3770	이화5길 10 (중산동) 626-3	
30	열린소아청소년과의원	297-7733	신답로 40 (지팝프라자 4층)	
31	코끼리이비인후과	294-8275	아진로 76 (상안동,맑은샘빌딩 2층)	
32	민사랑내과의원	292-1111	아진로 102 (그린상가 201호)	천곡동
33	새현대의원	291-3770	천곡길 169 (대동아파트상가 A동 201호)	
34	연희가정의학과의원	295-0800	천곡남로 33 (삼성코아루상가 203호)	
35	영남이비인후과의원	286-8277	가재길 87, 3층	
36	홍찬의소아청소년과	281-0756	달천로 9 (창성빌딩 2층 202호)	
37	한결의원	268-8227	산하중앙2로 290	산하동

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-29호

## 2019년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고

「주민투표법」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(단위 : 명)

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			주민투표 청구 주민 수 (총수의 1/20)
계	내국인	외국인	
160,871	160,635	236	8,044

- ※ 내 국 인 : 2018년 12월 31일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  
(재외국민 주민등록자 포함)
- ※ 외 국 인 : 2018년 12월 31일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에 등록되어 있는 영주의 체류 자격을 갖춘 19세 이상의 외국인
- ※ 「공직선거법」 제18조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

2019. 1. 10.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-30호

## 2019년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 공고

「주민소환에 관한 법률」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역선거구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19. 1. 10.

##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○ 구청장

(단위 : 명)

구 분	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	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 수	최소 서명인 수	비 고
북 구	160,820	24,123		
구	농소1동	29,837	1,609	
청	농소2동	28,071	1,609	
장	농소3동	30,200	1,609	
	강동동	11,723	1,609	
	효문동	26,087	1,609	
	송정동	16,475	1,609	
	양정동	9,267	1,391	
	염포동	9,160	1,374	

## ○ 구의원

(단위 : 명)

구 분	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	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	최소 서명인수	비 고
구 의 원	가산거구	58,035	11,607	
	동별			
	농소1동	29,837	581	
	강동동	11,723	581	
	송정동	16,475	581	
의 원	나산거구	58,271	11,655	
	동별			
	농소2동	28,071	281	
	농소3동	30,200	302	
의 원	다산거구	44,514	8,903	
	동별			
	효문동	26,087	446	
	양정동	9,267	446	
	염포동	9,160	446	

※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는 2018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 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하며,

1.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우리 구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(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)
2.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 산정

※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수

1. 구청장 : 청구권자 총수의 15/100이상
2. 구의원 : 청구권자 총수의 20/100이상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-31호

## 2019년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 공고

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19세 이상의 주민수(「공직선거법」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)와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연서 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(단위 : 명)

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 총수			연서주민수 (청구권자 총수의 1/40이상)
계	내국인	외국인	
160,820	160,635	185	4,021

- ※ 내 국 인 : 2017년 12월 31일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 주민
- ※ 외 국 인 : 2017년 12월 31일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중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
- ※ 연서주민수 :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/40

2019. 1. 10.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9 - 49호

##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9년 1월 10일

##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#### 1. 개정이유

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근거가 되는 법령 포괄적으로 규정(안 제1조, 제4조제1항제1호)  
 (기존)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제5항 및 제6항 같은법 제34조제3항  
 (변경) 「국민건강증진법」  
 (기존)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 
 (변경)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공원
- 나. 법령 제명 변경사항 반영 및 문구 변경(안 제4조제1항)
  - 제명 및 문구 변경(안 제2호)  
 (기존) 「학교보건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

### 정화구역 중 절대 정화구역

(변경)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 
중 절대보호구역

- 근거법령 명시 및 명칭 변경(안 제3호)
- (기존) 버스 및 택시 정류소
- (변경)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
- 상위법령(「국민건강증진법」)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“어린이 놀이터”는 중복 규정이므로 조례에서 삭제(안 제4호)

다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(안 제6조, 제9조)

### 3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 : 따로 붙임

### 4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0일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(참조 : 보건소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라. 제출처

- 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8, 울산광역시 북구보건소

- 전화번호 : 052-241-8302, 팩스번호 : 052-241-8109

### 5. 기타사항

「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」 일부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,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##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성명(단체명) :
- 주 소 :
- 전 화 번 호 :
- 의 건 제 출

조례(안)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건	비고
	찬성	반대		

[붙임 1]

##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제5항 및 제6항 같은 법 제34조제3항”을 “「국민건강증진법」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.

1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공원
2.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질대보호구역
3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

제6조제3항 중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[붙임 2]

#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국민건강증진법</u>」 제9조제5항 및 제6항 같은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울산광역시 북구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국민건강증진법</u>」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4조(금연구역의 지정 등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「<u>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</u>」에 따른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</li> <li>2. 「<u>학교보건법 시행령</u>」 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 정화구역</li> <li>3. <u>버스 및 택시 정류소</u></li> <li>4. <u>어린이 놀이터</u></li> <li>5. (생략)</li> </ol>	<p>제4조(금연구역의 지정 등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「<u>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</u>」에 따른 도시공원</li> <li>2. 「<u>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</u>」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</li> <li>3. 「<u>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</u>」에 따른 <u>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</u></li> <li>4. &lt;삭 제&gt;</li> <li>5. (현행과 같음)</li> </ol>
<p>제6조(흡연구역의 지정 등)</p> <p>①~② (생략)</p> <p>③ 구청장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자에게 흡연구역을 이용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.</p>	<p>제6조(흡연구역의 지정 등)</p> <p>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9조(과태료) 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「<u>국민건강증진법</u>」 제34조제3항에 따라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	<p>제9조(과태료) ① ----- -----<u>사람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